

「장위1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우리 구 「장위1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(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13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의 종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사업의 명칭 : 장위1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9-114번지 일대
- 면 적 : 8,366.8m²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시기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
- 사업의 착수예정일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
- 사업의 준공예정일: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명 칭 : 장위1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형인)
- 사무실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21, 2층

5. 조합설립변경 내용

- 조합정관 및 조합원 변경